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(약제)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42호(2014.12.3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40호, 2014.12.30)을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변경 내용

1) 신설 4개 항목

- [114] Rizatriptan benzoate 경구제(품명: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)
- [219] Telmisartan +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(품명: 듀오월정)
- [399] Carglumic acid 경구제(품명: 카바글루확산정200mg)
- [399] Sodium alendronate 시럽제(품명: 마시본액)

2) 변경 3개 항목

-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
- [232]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(품명:로섹캡셀 등), Lansoprazole(품명:란스톤캡슐 등),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(품명:판토록정 등), Rabeprazole(품명:파리에트정), Esomeprazol(품명:빅시움정 등)
- [821] Remifentanil 주사제(품명:울티바주)

나.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 부터

붙임 1. 고시문

2. 변경대비표

3. 별지 1~3 (신설 및 변경사항)

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629 (2014.12.30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